

# 2PRINCIPLES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6수능 AB공통)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 부른다.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확정 판결 이후에 ㉦ 변론상의 새로운 사정이 ㉧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다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난 ㉩ 으로서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독서분석능력 적용 과정>

첫 단락 - 제재가 무엇인가? (-> 서론인가?)  
 (‘제재는 무엇인가?’ 명확하게 제재가 제시되지 않습니다. P와 E의 소송 문 제정도가 있습니다.)

2단락의 첫 줄이 제재를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이 이 소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재구나. 그러면 1단락은 제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고, 제재로 가기 전 일반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니 [도입]이겠다.

본문 2단락 - 각 문단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일반적 진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열거형 내포’ 항상 중요하다) 부관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군요. 실제 나열! (‘예시’는 추상, 생소한 개념을 와닿게 한다.) 2문단부터 패닉이 되었다면, 당신은 수능의 본질(추상적/생소한 지문이 나온다)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부관/기한/조건/정지조건/해제조건 => 추상적이고, 생소합니다. 머릿속에 붕붕 떠다닐 것입니다. 닥치고 예시를 활용하십시오. 예시를 곱씹음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을 그때서야 ‘와닿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E가 소송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닌가? 평생 소송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승소’는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이다. => 1문단의 CASE는 ‘조건’이네 => 예시로 곱씹어 봤다면, 첫 문제 정답 바로 도출! (선택지는 1문단의 CASE를 기한이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수강료 지급)가 발생되니, ‘정지 조건’이네”

이렇게 예시로 추상적인 개념을 곱씹어봤다면, 2문단에서 패닉 먹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안 봐도 될 정도로 금방 와닿게 됩니다.

본문 3단락 - ① 각 문단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② 문단 간 관계? - 관계말해주는 문장/구조도

(일반적 진술) 기판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 같은 기호 => 같은 기호) ‘기판력’에 대해서 표현이 교환되는 것을 캐치해야 합니다. 마지막 <보기>문제에서,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할 때, 헛갈리거나, 다시 읽으면서 체감난이도 스스로 높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비극입니다 비극

(예시는 추상, 생소한 개념을 와닿게 한다.) 기판력이 추상적이고, 생소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계약서 발견은 기판력 때문에 소송이 없구나.” (3문단 화살표 추적!)

본문 4단락 - ㉠ 각 문단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 문단 간 관계? - 관계말해주는 문장/구조도

# 2PRINCIPLES

(3단락과의 관계 부분) 3단락에선 기판력이 있어서, 같은 사안으로 소송이 안 된다는 것(예를 들어, 계약서 발견은 소용없다.)이었는데,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다.

(‘예시’는 추상, 생소한 개념을 와닿게 한다.)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라는 개념이 우리 일반 감각과 다르죠? 즉 생소합니다. 어쩌라구요? 이마저도 예시가 있습니다. **곱씹으세요! (4문단 화살표 보세요!)**

- 1)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쓰여진 것이니,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아니다.”
  - 2) 패소판결 후 임대차 계약 만료되면 다시 소송가능
- 어! 임대차 계약 만료같은 것이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구나

(‘예시’는 추상, 생소한 개념을 와닿게 한다.) 지금 파악한 예시들은 마지막 문단의 P와 E의 소송문제와 <보기>문제에 **그대로 유사하게** 쓰이게 됩니다. ‘기판력 = 예시’라고 할 정도로 ‘평소에’ 예시를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문단 - 주제가 있는가?

(주제가 있는가? 없다. 본문내용일반화 안되었다. 본문이다.) 2,3,4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소송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 일반화는 안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2,3,4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진술)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예시’가 추상, 생소한 개념을 와닿게 한다.) (\*4문단 임대 예시와 매우 유사합니다.)

- 1) 조건이 미성취되었으니(그래 우리 2단락에서 예시로 곱씹었으니, E승소가 조건이었지! - 이게 안 되면 독해가 안 되는 겁니다.),
- 2) P패소-E승소 판결,
- 3) 이후 E승소한 조건이 성취가 되었으니>(\*4문단 예시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김’ 4문단 예시 계약만료와 유사’)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여, 조건 성취에 따른 수감료 지급을 소송하면 한다.

중요한 것은 ‘해설’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수능 당일 날 이미, 해설지로 짝 깔렸습니다. 그렇게 ‘사후적 해설’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 <이 글의 독해 핵심 도구>
- ▶ 독서분석법 - 제재/일반적진술/관계부분
  - ▶ 같은 맥락/의미 => 같은 기호
  - ▶ ‘예시’는 추상/생소한 개념을 와닿게 한다.
- 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맞힐 수 있도록’ ‘강사 말고, 내가 스스로’ ‘발상하는 것이 부드럽게’ 만들어야합니다. 이것이 기출을 분석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 40.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소하면 그때 수감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감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 ②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 ③ 계약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 ④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 ⑤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을 정답으로 택하지 못한 학생은 심각히 반성하셔야 합니다.

(‘예시’는 추상, 생소한 개념을 와닿게 한다.)  
1문단에서 P와 E의 ‘예시’가 나왔으니, 기한, 조건에 대해서 파악하면 아예네는 지금 ‘조건’에 대해서 싸우고 있네라는 것을 쉽게 파악했을 겁니다. 다시, 읽으려 간다구요? BYE BYE~~ 저는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는 1초만에 풀었습니다. 이걸 왜 다 점검합니까...?

[명시적 근거1] 2문단 7행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연결논리] 승소하는 것이 확실히 발생할 일은 아니다. 승소는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조건이다.

[명시적 근거2] 5문단 2행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 된다.’  
[연결논리] E가 승소하는 것이 조건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② 독서분석법 상 2문단으로 가면 됩니다. (이마저도 예시로 곱씹어 왔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음.)

[명시적 근거] 2문단 7행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연결논리] 장래에 확실히 일어나는가? 가능성인가?의 차이지만, 장래에 일어날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

③ [명시적 근거] 2단락 10행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부른다.’

④, ⑤ (같은 맥락/ 같은 의미 => 같은 기호) 기판력과 같은 기호로 표시한 것들이 교환된다. 3문단에서 금방  를 주욱 확인해주세요. 매번 다시 읽으면, ‘비극’입니다.

④번 [명시적 근거] 3문단 1행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공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중략) ‘기판력’을 인정한다.

⑤번 [명시적 근거] 3문단 9행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2PRINCIPLES

40.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②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 ③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 ④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에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다.

[그름달's view] 해당 문제는 기본적으로 독서분석법과 핵심 도구들('예시'는 추상, 생소한 개념을 와닿게 한다.) 그리고, ('같은 의미/맥락 => 같은 기호')로 독해를 얼마나 잘했는가에 따라서, 정답을 부드럽게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정말 딱딱하게 "몇 문단 몇 행"을 험난하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가 되십시오.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첫 번째 소송에서 P의 청구를 추론해보자.

[명시적 근거] 1단락 5행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연결논리] E가 소송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P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니, 수강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이다.

두 번째 소송에서 P의 청구를 추론해보자.

[명시적 근거2] 5단락 2행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지문 분석할 때, 해당 내용을 ('예시'는 추상, 생소한 개념을 와닿게 한다.) 도구로 '쉽게' 독해했습니다.)

[연결논리] (E가 승소) 조건이 실현되었고, 두 번째 소송에서 P가 승소한다는 것은 E가 승소했고,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P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수강료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E가 수강료에 관한 소송 사유가 없어지게 된다.

① [명시적 근거1] 1단락 7행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명시적 근거2] 5단락 2행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 된다.'

[연결논리] E는 첫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것이다. 내가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즉 내가 승소하지 않았다. 라는 점을 주장한다.

② [명시적 근거] 5단락 2행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 된다.

[연결논리] E가 승소(조건 성취)하지 않았으므로, 수강료를 낼 필요없

다는 판결이다.

④ [명시적 근거2] 5단락 2행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연결논리] 첫 번째 소송에서 E가 승소했으니, 두 번째 소송에서는 E의 승소라는 조건이 실현되었다.

⑤ [명시적 근거2] 5단락 2행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연결논리] 두 소송 전부 유효하다. 첫 소송이 유효하기 때문에, 조건이 실현되었고, 이에 따라 두 번째 소송에서 P가 승소할 수 있다.

# 2PRINCIPLES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 간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 또는 (나)의 경우가 생겼다고 하자.

(가)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①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 ② (가)의 경우, 갑은 빌려 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나)의 경우,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⑤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름달's view] 이 문제는 정말 쉽습니다. 만약  
 -(‘예시’는 추상, 생소한 개념을 와닿게 한다.)  
 -(‘같은 의미/맥락 =>같은 기호’)

이 두 가지 도구를 능수능란하게 썼다면, 정말 쉽습니다.  
 ‘사후적’ 해설이 아니라, ‘일관된’ 독해도구의 ‘반복’이 핵심입니다.

(‘같은 의미/맥락 =>같은 기호’)  
 첫 번째로, <보기>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지문 내용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절대 정확히 풀 수 없습니다. 또는, “아 어디 있었지?” 찾으러 가는 순간 체감난이도는 극도로 상승합니다. 그게 웬 뽕짓입니까? 3문단에서 (‘같은 의미/맥락 =>같은 기호’) 독해 도구로, 극도로 개념들을 단순화해서 이해하고 있었으면 쉽게 3문단에서 끼리 교환했을 겁니다.

**기판력**,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쉽게 머릿속에서 교환이 될 겁니다. 벌써, ①, ②을 cut하세요. 너무 쉽습니다. 이것이 ‘구현’되도록 ‘훈련’만 좀 된다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3초만에 안 되고, 아 햇갈려 다시 지문을 보러간다고 bye bye....

(‘예시’는 추상, 생소한 개념을 와닿게 한다.)  
 두 번째로, (‘예시’는 추상, 생소한 개념을 와닿게 한다.) 이 <보기>문제가 왜 쉽냐면, 3문단, 4문단의 ‘예시’를 그대로 가져다가 썼습니다.

- 3문단 ‘예시’이자 ‘같은 맥락’ 이미 지나간 계약서’는 판결이전에 쓰여진 것이어서 ‘기판력’을 이길 수 없다고 지문에 친절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 ②번 적절, ⑤번 틀렸네!

- 또한, 4문단(일반적 진술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 생겼을 경우 소송이 가능하다.)의 예시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예시’는 ③, ④번을 쉽게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은 4문단 예시 ‘계약 기간 만료’와 똑같네”

지금 ‘몇 문단의 몇 행’ ‘근거 찾기 놀이’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해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시’는 추상, 생소한 개념을 와닿게 한다.)  
 -(‘같은 의미/맥락 =>같은 기호’)

이 두 가지 도구가 사골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도구가 여러분들이 사후적인 해설을 때려박아서, 기출을 간신히 이해한 것과는 다르게, 발상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 [명시적 근거] 4단락 4행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연결논리] 이미 지나간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쓰여진 것이어서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아니므로, 기판력에 의해 새로운 소송을 할 수 없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명시적 근거] 3단락 4행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연결논리]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기판력이 있다는 것이고, 더 이상 소송으로 다룰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상소를 해서 다룰 수 없다.

② [명시적 근거] 4단락 4행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연결논리] 이전에 쓰여진 계약서는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  
 ③[연결논리] 계약 상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

④ [명시적 근거] 4단락 6행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대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연결논리] ‘예시’처럼 ‘계약만료’라는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으니,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 2PRINCIPLES

---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수취하였다
- ② ㉡: 부가하는
- ③ ㉢: 지시한다
- ④ ㉣: 형성되었을
- ⑤ ㉤: 경유하여